

발급번호 제 호

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

대상물품	명칭	생산·수입 연월일
	용도	
	특징	
	생산자·수입자 또는 판매자(연락처·주소)	
평가결과 (내용·이유)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임업진흥원의 장

직인

※ 위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